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상북도조례안 제9조제4항에서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은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직무수행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이 교육감의 관련 법령상의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넘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교육감이 기속되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교육감의 관련 법령상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진흥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I | 입안 배경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업중단을 경험한 학생은 2010년 6만 592명에서 2012년 7만 436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법에서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¹⁾이라 부르고 배워야 할 학생이 아니라 복지대상인 청소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배워야 할 학생이 학교를 떠난 사실에 근거하여 학교 밖으로 청소년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37만 7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을 계속 학생으로 부르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필요하다.

지난 2017년 9월 1일 의원발의(김병욱의원 등 11인)된 「대안교육진흥법안」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발의된 법률안이다.

II | 「대안교육진흥법안」 주요 내용

1. 대안교육의 정의(안 제2조)

- 가.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함
- 나.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서 이 법 제5조에 따라 설립을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설치하는 기관을 말함.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안 제5조 ~ 안 제9조)

- 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4. 의무교육 유예(안 제10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최근 입법동향

5. 대한교육지원센터(안 제12조)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6.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위탁(안 제14조)

-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게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7.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7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8.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자격(안 제18조)

- 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또는 해당 전문 분야의 경력을 갖추어야 함.
- 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Ⅲ | 입법전망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20세기에 사범대를 나온 교사가 19세기에 지어진 교실에서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계에서 나오던 시기, 우리나라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산업시대형 주입식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맞춤형 수업 내지 수준별 수업 등이 제시되곤 하였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교육적 수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학생이 계속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여한 면이 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떠난 학생을 청소년으로서 복지 지원을 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발의된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릴 수 있는 학생에게 진로체험교육, 인성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수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인 대안교육을 학교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기관을 학교,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교육관계법에서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미인가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대안학교 문제와 일부 귀족학교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안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